

#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남궁역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0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나무은행, 녹지의 실명관리를 대하여 나무은행은 나무나눔으로 변경하여 주택재건축, 재개발, 각종 정비사업시 이식된 수목을 녹화사업시 제공하고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을 체결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나무은행을 나무나눔으로 변경하고 주택재건축, 재개발, 각종

정비사업시 이식된 수목을 녹지관리청은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).

녹지의 실명관리시 참여하는 개인, 회사, 단체,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(안 제36조제3항),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(안 제36조제4항)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